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금지대상에 외국에서의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자 추가〉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1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2025. 11. 11.
3. 회 부 일: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①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제도는 출국금지 대상(제4조), 출국금지기간 연장(제4조의2)²⁾, 출국금지결정 통지(제4조의4)³⁾,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⁴⁾, 출국금지 해제(제4조의3)⁵⁾, 긴급출국금지(제4조의6)⁶⁾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음⁷⁾.

-
-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5)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6)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또한, 범죄혐의로 인한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 시 1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최근 일부 국가에서 불법 취업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고 목숨까지 잃는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⁹⁾,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나 여행금지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에서의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국민 안전 보장과 국익 훼손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8)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박람회 다녀올게” 떠난 22세 대학생, 97일 만에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다」, 한국일보 2026.07.19.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주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다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강제퇴거된 사람이 국내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점과¹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¹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행 「여권법」에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의2와 유사하게,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¹²⁾, 사실상 출국금

10) 각주 7) 참조

1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여권법」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인 반면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지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여권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점¹³⁾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⁴⁾.

문 의 처

02)6788-5057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인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13)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14) 이상과 같은 개정실익을 이유로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을 별도로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